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 1. 12 선고 2022가합500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한별

담당변호사 강성래

피고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선근

변론 종결2022. 10. 27.

판결 선고2023.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5. 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에게 주식회사 E가 202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년금

제2406호로 공탁한 1,445,237,579원 중 893,994,292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지붕판금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원고, 피고 등으로부터 강판 등을 공급받아 샌드위치 판넬 제작·판매 등 사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 원고와 위 피고에 대하여 물품공급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관할관청: 예산세무서)에 147,233,15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등을 영위하며 D로부터 샌드위치 판넬을 납품 받은 회사이고, D는 2020. 5.경 E에 대하여 1,445,237,579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E에 대한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D의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

D와 피고는 2019. 6. 27.과 2020. 5. 4.에 아래와 같이 D가 피고에게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위 2019. 6. 27.자 채권양도를 '1차 채권양도'라 하고, 2020. 5. 4.자 채권양도를 '2차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1	피고	2020. 5. 4.	2020. 5. 7.	E에 대한 채권 중 893,994,292원
2	피고	2019. 6. 27.	2020. 5. 25.2020. 6. 9.1) 새로운 채권양도통지가 아니라 종전 채권양도통지를 이유로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다.	E에 대한 채권 중 2,200,000,000원

다. E의 공탁

E는 2020. 12. 3. 'E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다수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었고,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D, 피고 등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년 금 제2406호로 1,445,237,579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위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을 제1부터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하고, 이 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4부터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 2차 채권양도의 대상인 D의 E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2020. 6.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2020. 12. 24.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관련 채권자들에게 보정명령이 발송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2차 채권양도는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D의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2차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1차 채권양도와 2차 채권양도의 관계

원고는 피고가 1차 채권양도계약으로 양도받은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을 2차 채권양도계약으로 양도받았다고 전제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1차 채권양도로 D가 E에 대하여 가지는 22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은 후 2020. 5. 4. 위 채권 중 893,994,292원에 대하여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것에 불과하고, 2020. 5. 4. D가 E에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D는 E와 사이에 2019. 4. 12. 계약금액 57억 원에 G회사 H동에 판넬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D는 E에 판넬을 공급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2) 피고는 D가 컬러강판의 공급을 요청하자 2019. 6. 27. D와 'E가 D에게 지급할 기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상거래채권 중 22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컬러강판을 공급하였다.

위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피고가 D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D의 물품대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원고는 1차 채권양도의 대상인 채권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2차 채권양도를 별개의 채권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1차 채권양도의 양도대상인 채권은 특정·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1차 채권양도를 통하여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양도채권을 확정하는 절차 등을 거칠 필요 없이 집행이 가능하므로, 1차 채권양도 시점에 확정적으로 D가 E에 가지는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D는 2020. 5. 4. 부도가 났고, 피고는 D로부터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893,994,292원임을 확인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D와 'D가 E에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893,994,292원'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후 E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차 채권양도 채권은 1차 채권양도 채권의 일부이고, 피고는 이미 D로부터 E에 대한 22억 원의 채권을 양도 받은 상태였으므로, 2020. 5. 4.자 채권양도계약서는 채권양도 통지를 위한 형식적인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의 입장이 불분명하긴 하나 선해하면, 원고는, 2020. 5. 4. D의 부도 당시까지 확정된 채권액이 없었거나 1차 채권양도의 효력이 소멸됐기에 2차 채권양도에 이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2차 채권양도를 별개의 채권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2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권양도 통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19. 6. 27. D로부터 E에 대한 채권 중 22억 원을 확정적으로

양도받았고, 2차 채권양도를 1차 채권양도와 다른 별개의 채권양도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2차 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 2019. 6. 27.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9년 D에 약 49억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D의 장기차입금이 2018년 말경 35.5억 원에서 2019년 말경 89.5억 원으로 약 54억 원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나, D의 총 매출규모와 2020. 1.경 피고에게 연장된 어음을 전액 결제한 사정과 피고가 D의 요청으로 컬러강판을 공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1차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D에 컬러강판을 공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점도 인정되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D가 위 채권양도 시점인 2019. 6. 27. 당시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D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채권양도를 통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한 2차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차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용찬

판사심현우

판사임동환

별지

1) 새로운 채권양도통지가 아니라 종전 채권양도통지를 이유로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이다.